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63권
2014년 8월 pp. 111~132

논문접수일 2014.07.31
논문심사일 2014.08.19
심사완료일 2014.08.21

국제리스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소고

- DCFR(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을 중심으로 -

오 원 석*
최 영 주**

Ⅰ. 서 론
Ⅱ. 국제리스계약의 일반적 고찰
Ⅲ. 임대인의 주요의무
Ⅳ. 임차인의 주요의무
Ⅴ. 결 론

주제어 : 국제리스계약, 임대수출, 임차수입, 임대차 수출입, 운용리스

Ⅰ. 서 론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임대차 방식의 수출입이 IMF 직후인 1998년~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글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주저자)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강사(교신저자)

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즉 국제리스계약[1]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본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통일법과 모델계약서가 아직 미비하여 국제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여러모로 애로가 많다.

국제리스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체결될 것이지만,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계약서상 규정할 수 없으므로 공백을 보충(gap-filing)해주고 분쟁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리스계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준거법 중에서 공통참조기준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2] 제4권 Part B를 토대로 하여 당사자의 의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DCFR[3]은 EU 차원에서 통일적인 유럽민사법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안된 모델법으로 2009년 10월 완성판(Full Edition)[4]이 발표된 바

---

1) 본 논문에서의 '국제리스'는 대외무역법상 임대차방식 수출입계약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스'라고 하면 금융리스를 지칭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리스는 운용리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 관하여는 제2장 참조.

2) DCFR은 독일 Osnabrück 대학의 Christian von bar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와 Hans Schulte-Nölke 교수를 책임자로 하고 있는 現存EC사법유럽연구단(European 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일명 'Acquis 그룹')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발간한 모델법이다. DCFR은 법령발안권을 가진 유럽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EU 회원국내의 학자 및 법률 관련 실무가들 약 200여명 이상이 관여하여 완성된 규범이다.

3) DCFR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총칙(General provisions), 제2권은 계약과 기타 법률행위(Juridical Acts), 제3권은 채무와 채권, 제4권은 계약 유형 및 그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제5권은 타인을 위한 사무참가(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제6권은 타인의 손해로 인한 비계약적 책임, 제7권은 부당이득(Unjustified Enrichment), 제8권은 동산소유권의 취득 및 상실, 제9권은 동산의 담보권, 제10권은 신탁이다. 이외에 DCFR의 구성에 관하여 자세히는 김상중,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따른 채무불이행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0권 제2호, 2009, pp. 41~46 참조.

4)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있다. DCFR의 제4권은 계약 각론에 해당하며, 이 중에 Part B에서 리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5)]

국제리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들은 리스계약에 적용가능한 준거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상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서로 대응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당사자들의 의무로 한정하여 국제리스계약 즉, 임대차방식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에 대하여 고찰한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가정준의 연구[6)]와 최영주의 연구[7)]가 있으며, 본 논문은 최영주의 기존 연구를 재정리한 것으로 기존 연구보다 당사자의 의무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리스계약은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운용리스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만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국제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준거법상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및 국제리스계약 시 고려해야할 유용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uropean Private Law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 Full Edition, 2010.

5) DCFR 제4권은 개별 계약의 유형과 그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Specific Contract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m)를 다루고 있으며, Part A부터 Part H까지 총 8부로 구분하여 매매, 리스, 서비스, 위임, 상사대리, 프랜차이즈, 대리점, 소비대차, 인적 담보, 증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가정준, "DCFR의 물품 임대차 계약",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4권 제3호, 2010.

7) 최영주, "국제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Ⅱ. 국제리스계약의 일반적 고찰

국제리스는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리스가 국경을 넘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리스는 국경을 넘어서, 2개국 이상 상이한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리스거래를 의미한다. 국제리스는 주로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고가의 장비 위주로 이루어지며, 각종 조세혜택을 바탕으로 하여 1970년대에 가파르게 성장하였다.[8)]

이러한 리스계약은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리스는 임대인, 임차인, 공급자라는 3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즉, 금융리스계약은 3당사자가 리스계약과 매매계약이라는 2개의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에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를 취득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인 임대인(리스회사)과 임차인(리스이용자) 사이에는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인과 공급자 사이에는 임차인(리스이용자)이 선택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임차인과 공급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자가 목적물의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거래형태가 된다. 금융리스의 경우 형식은 임대차와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으로, 계약의 유형이나 법적 성질이 임대차와는 다른 특질이 있는 비전형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리스에 대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기본적 상행위로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설비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3조2에서는 금융리스의 의의로 “금융임차인이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금융임차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형태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금융적 성격의 거래가 아닌 서비스제공적 성격이 강하며, 법적성질은 전형계약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이다.[9)]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

---

8) Derek R. Soper and Robert M. Munro, *The Leasing handbook*,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93, p. 355.

9)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제8판, 삼영사, p. 411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7판, 박영

만이 계약관계를 가지는, 2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제3자인 공급자의 개입은 없고 2 당사자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법적 성질이 임대차인 전형계약에 속한다는 점에서 금융리스와 차이가 난다. 이러한 운용리스는 우리나라 민법 제618조 이하 임대차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결국 국제리스계약은 목적물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상이한 법률체계하에서 인정되고,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리스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리스계약은 상이한 법률 및 회계, 복수의 통화, 그리고 상이한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이 적용되는 리스계약이라는 점에서 국내 리스계약과 구분된다.

Ⅲ. 임대인의 주요 의무

1. 목적물의 가용성(Availability) 의무

1) 목적물의 인도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리스계약상 인도일자까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임대인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이다.

목적물 인도의무와 관련해서 DCFR은 "임대인은 리스계약기간이 개시하는 때에 Ⅲ. - 제2:101조 (이행지)에 따라 결정된 장소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서의 인도[11]는 우리 민법상의 인도, 즉 임차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은 리스계약기간의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한다.

사, 2014, pp. 397 ; United Nations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alysis of Equipment Leasing Contract*, UN, New York, 1984, p. 5.

10) DCFR 제3:101조 제1항.

11) 동 조에서의 인도는 임차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CISG 제31조에서의 인도(delivery)와는 차이가 있다. CISG에서의 인도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p. 127~128 참조.

(1) 목적물의 인도시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는 '리스계약이 개시할 때'이다. 리스계약이 개시되는 시기는 DCFR 제2:101조 제1항[12]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된 때이다. 따라서 목적물이 불인도되거나 혹은 인도지체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개시 시기가 도래하면 리스계약은 시작된다.[13] 그러나 사전인도(조기이행)의 경우에는 제2:101조 제2항[14]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시점'이 리스계약이 개시되는 시기가 된다.

(2) 목적물의 인도장소

인도장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합의된 사항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DCFR Ⅲ. - 제2:101조 (이행지)[15]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의 채무자의 영업소, 즉 임대인의 영업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만일 임대인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인도장소가 되는데, 여기서 리스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라 함은 리스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는 임대인의 영

---

12) Ⅳ.B.-제2:101조 (1) 리스계약기간은 다음의 시기에 개시된다. (a)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때 (b) 리스계약기간이 개시되어야 할 시간적 범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사안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그 기간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 내에서 임대인이 선택한 때 (c)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때.

13) 그러나 리스계약이 개시할 때 목적물의 불인도나 인도지연으로 인해 목적물을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임대인나 혹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DCFR IV.B.- 제4:10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구제수단은 매매계약에서의 매용인의 구제수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14) Ⅲ.-제2:101조 (2) 리스계약기간은 제1항의 개시 시점보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통제(control)한 때가 이른 시기인 경우에는 그때부터 개시된다.

15) 제2:101조 (이행지) (1) 이행지가 채무의 내용으로부터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장소는 (a) 금전적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업소, 그리고 (b) 그 외의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소가 된다. (2) 전항의 경우 (a) 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된다. (b)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혹은 채무가 영업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거소로 대신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가 영업소 혹은 상거소를 변경하여 이행에 부수되는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증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업장소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입수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를 의미한다.[16]

2. 목적물의 계약적합의무

1) 리스계약의 개시 시 계약적합성

리스계약이 개시하는 시점의 계약적합성에 관하여는 제3:102조에서 다루고 있다. 통상 계약당사자들은 목적물의 품질 및 수량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합의할 것이다. 목적물은 동 조 제2항 a호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된 품질 및 수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제2항 b호에 의해 목적물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 목적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상태로 포장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매매계약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에서도 필요하다. 제2항 c호에서는 부속물과 설치지시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 d호에서는 목적물이 제3: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적합성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1) 계약적합성의 기준시기

목적물에 대한 계약적합성의 판단 기준시기는 동 조 제1항에 의해 "리스계약기간이 개시할 때"(at the start of the lease period)가 되며, 임대인은 리스계약기간이 개시할 때에 존재하는 계약부적합에 대해 책임진다.

리스계약이 개시할 때 계약적합성과 그 이후인 리스계약기간 동안의 적합성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계약부적합이 리스계약의 개시 시에 존재하였으나, 양 당사자 모두 알지 못하였던 숨은하자(hidden defect)의 경우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목적물에 숨은하자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그 부적합이

---

16)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480.

17) 목적물의 계약적합성은 매매계약의 물품적합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리스계약에서는 물품명세확정권을 실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물품명세확정권과 유사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리스계약이 개시한 이후에 판명되더라도 리스계약 개시 시의 계약부적합으로 다루어진다.[18]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적합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19]

2) 계약적합성의 내용

계약적합성의 판단기준은 제3:102조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계약내용이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약정이 없거나 계약내용이 명확치 아니한 경우에는 제3:103조[20]가 이를 보충한다.

(1) 특별 사용목적 적합성

목적물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리스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03조 a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문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대인의 전문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특별사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문지식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문지식이 부족한 아마추어인 경우에도

---

18) 계약부적합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시기가 아니라 부적합이 리스계약의 개시 시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이다. 리스계약의 개시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 즉,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러한 당사자간 합의한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2:101조에 의해 결정된다.

19)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492.

20) 목적물은 다음의 경우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a) 목적물이 계약체결 시에 임대인에게 알려진 특별한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동종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c) 임대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한 목적물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수령을 기대할 수 있는 부속물, 설치지시 또는 기타 설명과 함께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f)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 및 성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21]

(2)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

제3:103조 b호에서는 목적물이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즉, "통상적인 기준"(ordinary standard)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목적물은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특별비용이나 애로사항 없이 통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목적물은 예컨대, 안전이나 기술수준 등과 같이 관련 법규나 또는 공적·사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도 준수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동 조 b호에서는 실질적인 계약서와 관계없이 "동종"(same description)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조의 요건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리스계약기간, 임대료, 인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2]

(3) 견본 또는 모형과 일치성

제3:103조 c호에 의해 임대인이 리스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이나 모형을 제시한 경우, 목적물은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인도예정인 목적물이 임차인이 기대하는 품질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불일치(예컨대, 다른 색상)는 허용된다.[23]

(4) 통상적 포장기준에 적합

목적물은 제3:103조 d호에 의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용기에 담겨야 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포장은 목적물의 운송, 보관 및 반환과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다. 목적물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방법으로 담거나 혹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

---

21)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494.

22) *Ibid.*

23) *Ibid.*

여 포장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된다. 동 조 d호는 포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특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유지·보수하여야 하는 금융리스계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24]

(5) 부속물 및 설치지시의 제공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속물, 설치지시 등에 관하여는 제반 상황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단기 리스계약에서는 부속물 및 설치지시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나, 장기 리스계약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유지·수선을 위해 이러한 지시사항이 필요하다. 또한 통상적인 사용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속물인 경우에는 목적물에 부가되어야 하지만, 제반상황으로 판단하여 부속물이 임차인의 특별 사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스스로 조달하여야 한다.[25]

(6) 임차인의 합리적인 기대에 적합성

제3:103조 f호에서는 목적물이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 및 성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칙은 동 조의 다른 규칙들과 일부 중첩되는 바가 있지만, 이전의 내용을 보충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3) 리스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적합성

일반적으로 목적물은 기준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스계약에서는 각 당사자는 자신이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DCFR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양 당사자에게 배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24)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495.

25) *Ibid.*

(1) 임대인의 의무

리스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적합성에 관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원상태(original condition)로 유지할 의무와 리스계약상 목적에 적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해당 계약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최초에 요구된 목적물의 수량 및 품질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26]고 규정한다.[27] 이는 목적물에 발생한 손상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고, 목적물이 본래의 기준 및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바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28]

목적물은 리스계약기간이 개시할 때 임대인에 알려진 임차인의 특별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동종의 통상 사용목적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리스계약기간 동안에 목적물의 계약적합성이란, 변경되는 상황하에서도 목적물이 해당 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요건이 변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임대인이 목적물이 관련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유지관리의무는 제5:104조 제1항 c호[29]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한정된다. 임차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활동에는 리스계약기간 중에 통상

---

26) DCFR 제3:104조 제1항.

27) 영국에서 대부분의 할부매매(hire purchase)계약은 임차인로 하여금 해당 물건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수선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동 조항에 묵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Brady v. St. Margaret's Trust Ltd* [1963] 2 QB 494).

28) 프랑스의 한 판례에서는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한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즉,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목적물이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이를 수선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Cass.civ. 25 February 2004, Bull.civ. 2004.III, no. 36 참조).

29) 제5:104조 제1항 (c) 리스계약기간, 리스의 목적 및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한 목적물의 정상적 기준 및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통상 기대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으로 임차인이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기대되는 조치는 목적물의 성격, 목적물의 사용목적, 리스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은 목적물의 정상적인 기준 및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목적물의 업그레이드와 리뉴얼은 임차인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물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수선도 목적물의 정상적인 기준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의무에서 배제된다. 특히 이때 목적물에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에 의해 초래되었는지 제3자에 의해 초래되었는지 와는 관련 없이 수선은 임대인이 하여야 한다. 물론 손상이 임차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에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수선의무는 여전히 임대인 측에 남아있다.

3. 목적물의 반환 시 협력의무

DCFR 제3:106조에서는 리스계약이 만료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에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리스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환 목적물을 수령해야할 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목적물의 반환은 임대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에 관한 임대인의 협력제공은 그 자체가 의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환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인 측의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0) 이러한 협력의무에 관하여는 DCFR III.-제1: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다루고 있는 CISG 제60조로 동 조에서는 매용인에게 물품 인도 시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계약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에서 목적물 반환 시 수령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찾을 수 없다.

Ⅳ. 임차인의 주요의무

1. 임대료 지급의무

1) 임대료 지급시기

리스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또는 최소한 그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내에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제5:102조[31]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된다. 임대료를 일정한 간격마다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 예컨대, 월별 지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조 a항에 의거하여 매월 말에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이 약정된 리스의 경우에는 전기간(全期間) 동안의 임대료를 합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 조 b항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시에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32]

그러나 당사자간에 리스계약기간과 일정한 기간별 임대료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료는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이 종료한 때(at the end of reasonable intervals)에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이란 대상의 목적과 성격, 사안의 정황, 그리고 관련된 관습과 관행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33]

2) 임대료 지급장소

리스계약 당사자는 리스계약 체결 시에 임대료 지급장소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장소에서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료 지급장소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다면, DCFR Ⅲ. - 제2:101조 (이행지)[34]의 규정을

---

31) 제5:102조 임대료는 다음의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a) 임대료는 합의된 각 기간이 종료한 때, (b) 특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약정된 리스기간의 만료한 때, 또는 (c) 기간의 약정이 없고 리스기간이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이 종료한 때.

32) 물론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3)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546.

원용하여 임대료 지급장소를 결정한다.

따라서 임대료의 지급장소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는 경우 리스계약 체결 시의 채권자의 영업소, 즉 임대인의 영업소가 된다. 그러나 채권자(임대인)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급장소가 리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되고, 채권자(임대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보아 그의 상거소가 임대료의 지급장소가 된다.[35]

2. 목적물의 수령의무

제5:103조에서는 임차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에 대해 임대인의 인도의무를 협력할 의무와 목적물의 지배를 획득할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동 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내에서 협력하여야 할 협력의무와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하여야 하는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 협력제공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의무는 채무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에서 약속한 이행의 결실을 얻을 의무를 포함한다.[36] 협력의무는 주요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득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한

---

34) 이행지 규정에 관하여는 각주 15 참조.

35)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의 영업소나 상거소에 보유하고 있는 특정 은행의 계좌를 알려주고 임대료를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6) 예컨대,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계약을 한 자는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스스로의 모습을 화가에게 보여야 하며, 이러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의도했던 계약의 목적, 즉 그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대금의 취득은 이루어질 수 없다(박희호, “계약상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유럽서비스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3권 제3호, 2008, p. 307).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개입되게 된다.

2) 목적물 수령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의 수령의무로 제5:103조 b호[37]에 의거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의 지배를 획득한다는 것은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하는 장소는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되며, 이러한 인도장소는 당사자간 합의로서 지정할 수 있다. DCFR에서는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 본연의 의무로 규정하여 이를 불이행하는 것도 계약위반이 된다.

3. 목적물의 보전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목적물의 보전의무와 관련하여 제5:104조 제1항 a호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요구사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b호에서는 목적물의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물의 유지관리의무에 관하여는 c호에서 다루고 있다[38].

임차인은 리스계약에서 정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은 목적물의 취급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동 의무에는 리스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작위, 부작위 또는 용인의무가 포함된다.

리스계약기간 동안의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는 제3:104조에서 전술한 바

---

37) 제5:103조 (b)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리스물건에 대한 지배를 획득(take control of the goods)하여야 한다.

38) 제5:104조 (1) 임차인은 (a)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요구사항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b) 리스계약기간, 리스의 목적 및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로써 목적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c) 리스계약기간, 리스의 목적 및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한 목적물의 정상적 기준 및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통상 기대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있다. 임차인의 유지관리의무는 리스계약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약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39]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2) 손해방지 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제5:105조[40]에 의거하여 목적물이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는 바, 목적물에 가해지는 위험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비현실적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목적물에 어떠한 손해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제5:107조 (통지의무)에 의거하여 이를 임대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리스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에 그 이전보다 가치를 증대 혹은 개선시키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제5:106조에서는 임차인이 그러한 가액 또는 가치의 증대를 위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41] 임차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혹은 제5:104조[42]에 의거하여 목적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통상 유지보수 작업은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해주고, 그러한 작업은 예컨대, 마모된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와 같이 목적물에 개량을 가져온다. 그러나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유지 및 개량작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없다.

---

39) 제3:104조 제3항 참조.

40) 제5:105조 (1) 목적물에 가해지는 위험 및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목적물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당해 조치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초래된 의무 또는 비용(금전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상(indemnification)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1)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556.

42) 제5:104조에 관하여는 각주 38 참조.

3) 목적물의 보존에 따른 인용의무

제5:108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작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은 작업인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3] 그러나 임차인은 수선작업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액청구권을 갖는다.[44]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길 경우에 수선작업을 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수선하기 위한 작업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용인의무를 진다. 그러나 동 조하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의 보존, 하자 제거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인 경우에만 용인하도록 제한된다. 즉,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되는 수선작업 및 기타 작업까지 용인할 필요는 없다.[45][46]

동 조 3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동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 임대인이 목적물을 검사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도 진다. 또한 임차인은 리스계약기간 중에 잠재적인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 검사하는 것도 용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목적물이 고가이거나 리스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만 해당된다.[47]

---

43) 우리나라 민법 제624조에서도 임대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임차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25조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44) 우리나라 민법 제627조 제1항에서도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45) 그렇지 않으면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갖는 독점적인 사용권이 쉽게 침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46)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op.cit.,* p. 1564.

47) *Ibid.*

4. 임차인의 통지의무

제5:107조에서는 리스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에 손해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혹은 이와 유사하게 제3자의 권리 주장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관하여 임대인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통지하여야 한다.[48]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임대인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동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의 발생이나 제3자의 주장 등을 최초로 알게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목적물의 반환의무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임대인의 계약해지와 같은 사유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기로 약정된 장소에서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DCFR 제5:109조에서는 목적물의 반환시기는 '리스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장소에 대해서는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되었던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따라서 목적물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되었던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목적물의 반환장소는 결국 임대인의 영업소가 된다.[50]

V. 결 론

국제리스계약의 당사자들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준거법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법제

---

48) 예컨대, 누가 자신이 목적물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그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9) 제5:109조.

50) IV.B.-제3:101조 (목적물의 가용성) 제1항 참조.

간 타협이 이루어져 통일법의 모습을 담고 있는 DCFR을 중심으로 국제리스계약 시 당사자들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분석하였다.

먼저, 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리스계약에서 정해진 인도예정일까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방해를 제거해야할 의무를 진다. 또한 리스계약이 개시하는 시점과 리스계약기간 동안에 목적물이 계약에 적합하도록 할 계약적합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계약적합의무는 리스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 알려진 특별목적이나 또는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이나 모형을 제시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목적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용기에 담겨야 하며,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속물, 설치지시 등도 제공되어야 하고, 목적물은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 및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스계약의 만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인 임대료 지급의무와 임대인이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목적물의 지배를 획득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수령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목적물을 유지·보수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에 위험 및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이 해당 조치를 취할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으며, 목적물의 보전을 위한 작업이 수행될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인용의무도 부담한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동안에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할 통지의무를 지고,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목적물을 임대인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으로 국제리스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논문에서 고찰한 DCFR 상의 리스계약의 각 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숙지하고,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한 유의점 및 보완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계약당사자들이 당사자의 의무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정준, “DCFR상 물품 임대차 계약”,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4권 제3호, 2010.

김상중,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따른 채무불이행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0권 제2호, 2009.

박희호, “계약상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유럽서비스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3권 제3호, 2008.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7판, 박영사, 2014.

최영주, “국제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제8판, 삼영사, 2013.

Derek R. Soper and Robert M. Munro, *The Leasing handbook*,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93.

Lilleholt, Kare, et al., *Principles of European law: lease of goods (PEL L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The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2012-2013 ed, West, 2012.

Von Bar, Christian, and 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 Full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Whaley, Douglas J., *Problems and Materials on the Sale and Lease of Goods, 5th ed,* Aspen Publishers, 2008.

ABSTRACT

(A) Study on Contracting Parties'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 Focus on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

Oh, Won Suk
Choi, Young Joo

This paper analyzed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entering into a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Book IV, Part B.

The lessor'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or must deliver goods to the lessee by the due date of delivery so that the lessee can use the goods on the starting date of the lease agreement. ii) The lessor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so that the goods mee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t the start of the lease agreement and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lease agreement. iii) If the lessee returns the good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 lessor must cooperate with the lessee.

The lessee'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ee must pay rent, which is the most critical obligation of the lessee. ii) The lessee must cooperate with the lessor so that the lessor can perform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accept the goods of which the lessee shall take control. iii) The lessee shall perform fiduciary duties while it uses and makes profits from the goods, and when the lessor cannot take any measure to protect the object, the lessee must prevent damage. Further, if the lessor pays expenses that are not considered necessary expenses, the lessor may not be reimbursed and must accept the goods after delivery to preserve them. iv) The lessee must give notice to the lessor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third party can claim rights to goods or infringe upon the lessor's ownership while using the goods. v) At the end of the lease period, the lessee must return the goods to the lessor.

Key Words :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International Leasing, Cross-Border Leasing